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 27 선고 2020가단4490 판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A단체

피고B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1. 1. 2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 30. 접수 제4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판사임혜원

별지